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3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임오경

윤준병 • 이훈기 • 정진욱

신정훈 • 윤건영 • 임호선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 •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 한국

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 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특례) ①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취득	1. <u>2028년</u>
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	
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	
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4
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	

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⑤ (생략)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u>2028년</u>
<u>2028년</u>
.
 ⑤ (현행과 같음)
·
· ⑤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세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 1.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취득 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 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 제40조(국민건강 등신사업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 3. (생 략)

1. <u>2028년</u>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u>2028년</u>
<u>.</u>
1. ~ 3. (현행과 같음)